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손자용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1년 1월 10일 박종성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O "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"의 제명이 조례내용과 차이가 있어 "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"로 개정하고,
- O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O 제목의 변경
 - 「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」로 변경.
- O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 - '~의 규정에 의하여'를 '~에 따라'로 변경
 - 조례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등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.
- 그 밖에 일본식 표현(기타 등), 어려운 용어의 정비 등

4. 검토의견

금번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과의 일치성을 위하여 조례명을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
주요내용으로는

- O 제목의 변경
 - 「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」로 변경
- O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정비
 - '~의 규정에 의하여'를 '~에 따라'로 변경

(의한 → 따른, 해당할 때 또는 해당하는 경우 → 해당하면)

조례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등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.

(사용기간중 → 사용기간 중)

그 밖에 일본식 표현(기타 등), 어려운 용어의 정비 등
(기타 → 그 밖의, 망실 → 훼손 등)

금번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과의 일치를 위하여 조례명을 변경하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 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※ 참고자료

- □ 시설의 의미와 타 시도 조례
 - "시설" 및 "시설물" 사전적 의미
 - "시설물"은 시설에 해놓은 구조물
 - "시설"은 도구, 기계, 장치 따위를 베풀어 설비함
 - 타시도 교육원 사용료 조례 명칭 현황
 - "시설"포함: 7개 시도(인천, 부산, 광주, 충남, 전남, 강원)
 - "시설"미포함 : 1개 시도(충북)
 - 사용료 조례 미제정 : 8개 시도(서울, 대구, 울산, 경기 등)
 - 운동장의 시설 포함 여부
 - 『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에 운동장을 체육 시설에 포함하였고, 『건축법시행령』에서도 운동장을 운동시설 로 포함 하였음.
 - ※ 참고자료
 - 운동장 [playground] : 운동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구역. 체조, 운동 경기, 놀이 따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구나 설비를 갖춘 넓은 마당.

○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

구분	체육 <u>시설</u> 종류
운동 종목	골프장, 골프연습장, 궁도장, 게이트볼장, 농구장, 당구장, 라켓볼장, 럭비풋볼장, 롤러스케이트장, 배구장, 배드민턴장, 벨로드롬, 볼링장, 봅슬레이장, 빙상장, 사격장, 세팍타크로장, 수상스키장, 수영장, 무도학원, 무도장, 스쿼시장, 스키장, 승마장, 썰매장, 씨름장, 아이스하키장, 야구장, 양궁장, 역도장, 에어로빅장, 요트장, 육상장, 자동차경주장, 조정장, 체력단련장, 체육도장, 체조장, 축구장, 카누장, 탁구장, 테니스장, 펜싱장, 하키장, 핸드볼장,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
시설 형태	운동장, 체육관, 종합 체육시설

○ 건축법 시행령 [별표 1]

13. 운동<u>시설</u>

다. <u>운동장</u>(육상장, 구기장, 볼링장, 수영장, 스케이트장, 롤러스케이트장, 승마장, 사격장, 궁도장,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)으로서 관람석이 없 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